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민선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02-365-5363)
제 목 [보도협조요청] 긴급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개최
날 짜 2020. 05. 19. (총 5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긴급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일시 장소 : 2020.05.19(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더 넓혀 위헌성을 더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과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은 5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긴급기자회견 >” 국회는 집시법개악 중단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긴급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 발언1 :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 발언2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 발언3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4 : 김선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2016 촛불집회 청와대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 발언5 : 민선 활동가,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민선 활동가 02-365-5363.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고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회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현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행동